



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

- (중수청법) ①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
②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
③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
- (공소청법) ①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
②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
③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

□ 검찰개혁추진단(단장 :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, 이하 추진단)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(이하 중수청)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.

-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, 국회·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다.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,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.

□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[중대범죄수사청법안]

- ①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,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,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*로 축소(공직자·선거·대형참사범죄 제외)하였다.

* 부패, 경제, 방위사업, 마약, 내란·외환 등 국가보호범죄, 사이버범죄

- ②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 직급체제로 일원화하였다.

※ '수사사법관'을 삭제하고, 임용, 정년, 결격사유, 징계, 적격심사,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제로 일원화

- 다만,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·정년 등을 보장하고,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.

- ③ 중수청장의 경우,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,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.

[공소청법안]

- ①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, 검사의 징계 종류에 '파면'을 추가하여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②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,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요구 조문이 '해당 수사에서 배제'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'교체임용'을 '직무배제'로, 요구대상자를 '임용권자'에서 '소속 기관장'으로 각 수정하였다.

- ③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·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.

-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	책임자	과 장 박경덕 (02-2100-2230)
		담당자	사무관 김형준 (02-2100-2231)
	입법지원국	책임자	과 장 신희영 (02-2100-2241)
		담당자	서기관 이기재 (02-2100-2242)
		책임자	과 장 유 호 (02-2100-2246)
담당 부서	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TF	책임자	단 장 임정은 (02-2100-2247)
		담당자	단 장 김준선 (02-2110-4612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	책임자	검 사 정성두 (02-2110-4512)
		담당자	단 장 이승재 (044-205-1991)
		담당자	사무관 차재빈 (044-205-1993)



구분	당초 입법예고(안)	재입법예고(안)
① 수사대상	▶ 부패, 경제, 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, 마약, 내란·외환 등 국가 보호범죄, 사이버범죄 <u>9대 범죄</u>	▶ 부패, 경제, 방위사업, 마약, 내란·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와 사이버범죄 <u>6대 범죄</u> ▶ 공직자·선거·대형참사범죄 제외 ▶ 사이버범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
② 인력체계	▶ <u>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</u>으로 구분 ▶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, 5급 이상 전문수사관 중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한 자로 자격 제한 ▶ 전문수사관의 계급은 1~9급으로 구성	▶ <u>수사관</u> 1~9급의 <u>단일직급체계</u>
③ 중수청장 자격	▶ 15년 이상 <u>변호사 자격 소지자</u> 또는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	▶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 종사자도 가능
④ 검사 신분 보장	▶ 검사는 <u>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파면</u>	▶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 ▶ 검사는 탄핵,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징계로도 파면
⑤ 직무배제 요구	▶ 지방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 시 <u>임용권자</u>에 대해 <u>교체임용</u> 요구 가능	▶ 지방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 시 <u>소속 기관장</u>에게 <u>직무배제</u> 요구 가능
⑥ 이의제기 불이익 금지	▶ (신설)	▶ 지휘·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<u>이의</u>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 금지 규정 신설